

# 연금 시장 리뷰 **51**호

## 경제현안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이슈 : 주택시장의 바이플레이션 원인과 시사점

## 퇴직연금

- 동향 : 고령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노후 준비
- 이슈 : 국민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과제
- 퇴직연금통계 (2011년 10월 현재)

## 세심록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10월 생산지표 위축으로 국내 경기 둔화의 불안감이 확대

-지난 11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산업생산이 전년동월대비 4.8%, 전월대비 0.3% 증가에 그쳐 유럽 재정위기의 악영향이 내수시장에 전이되는 모습을 보임

- 제조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로는 6.2% 증가했지만 전월대비로는 0.7% 감소
- 특히,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1.9% 줄어 2009년 8월(-15.2%) 이후 2년2개월만에 전월 대비로도 12.1% 감소해 2003년 1월(-15.5%) 이후 8년9개월만에 각각 두자릿수 감소를 보임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대비 0.3p,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도 전월대비 0.4%p 하락하면서 경기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짐

○ 금융 동향: 주요국 중앙은행 공조로 금융시장은 상승 전환

-미국, 일본, 유럽중앙은행(ECB) 등 6개국 중앙은행이 지난 11월 30일 달러 통화스와프 금리를 동시에 0.5%p 인하하는 등의 공조와 중국도 독자적으로 지급준비율을 0.5% 인하하면서 금융시장의 긴장이 완화됨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1월 18일 3.37%에서 12월 2일 현재 3.38%로 0.01%p 상승
- 11월 18일 1,137.5에서 25일 1,165원으로 폭등했던 원/달러 환율도 금융시장 긴장이 완화로 2일 현재 1,131.5원으로 하락
- 한편, 코스피 지수는 11월 18일 1839.2p에서 2일 현재 1,916.0p로 71.3p 급등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1/4	2/4	3/4	10월	11월18	12월2일	
실물 지표	GDP성장률(%)	0.3	6.2	4.2	3.4	3.4	-	-	
	산업생산(%)	-0.1	16.2	10.6	7.2	5.1	4.8	-	
	소비자물가(%)	2.8	2.9	4.5	4.2	4.8	3.9	4.2	
	실업률(%)	3.6	3.7	4.2	3.4	3.1	2.9	-	
	경상수지(억달러)	327.9	282.1	26.1	54.9	71.7	42.3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4.04	3.72	3.80	3.68	3.60	3.47	3.37	3.38
	원/달러(원)	1,276.4	1,156.0	1,119.8	1,083.2	1,085.1	1,150.3	1,137.5	1,131.5
	코스피지수(P)	1,682.8	2,051.0	2,106.7	2,100.7	1,769.6	1,909.0	1,839.2	1,916.0

주: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고,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 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자료임.

## □ 이슈 : 주택시장의 바이플레이션 원인과 시사점

### ○ 주택시장의 바이플레이션 현상 대두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시장 움직임이 대조적이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도시와 대형일수록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시장의 경우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부산, 대전 등 일부지역의 경우 과열에 가까운 모습이 나타나면서 점점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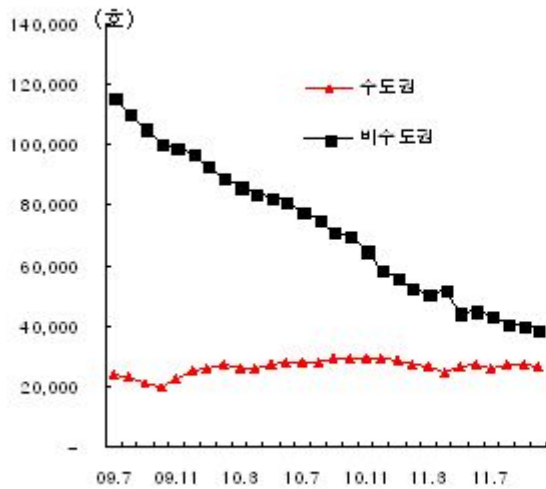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량 면에서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비수도권의 거래가 활발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국내 주택시장 내 수도권은 가격하락, 거래량 감소 등 디플레이션 현상이, 비수도권은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등 인플레이션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바이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비수도권의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수도권의 전세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다른 측면에서 바이플레이션 현상을 반증하고 있다.

### ○ 바이플레이션 발생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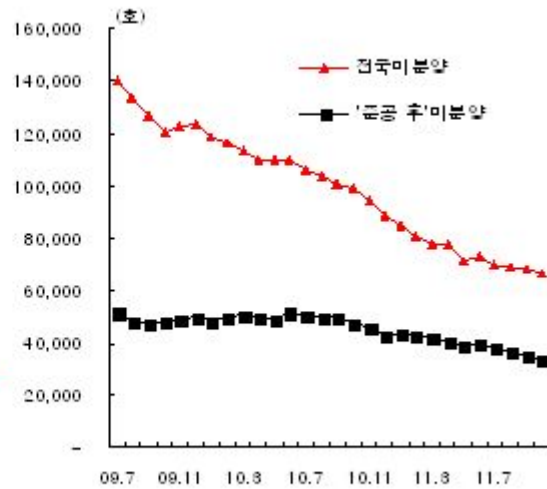
바이플레이션 현상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DTI 등 규제가 강화되었던 점,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의 전국 혁신도시 이전 등 정책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초과공급 조정 속도, 가계부채 부담의 차이, 주택 구입능력의 차이 등으로 수익률 추구 유동성이 비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초과공급의 조정속도 차이이다.** 비수도권 미분양아파트가 빠르게 줄고 있다. 비수도권 미분양아파트는 주로 소형 미분양 축소에 힘입어 2009년 7월 116,176호에서 2011년 10월 39,361호로 큰 폭 하락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신도시 등의 공급물량 미분양 등에 기인하여 오히려 2009년 7월 24,010호에서 2011년 10월 27,101호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미분양 중에서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의 비중은 2009년 7월 36.9%에서 2011년 10월 49.6%로 큰 폭 증가하고 있는 등 미분양의 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 지역별 미분양 아파트 >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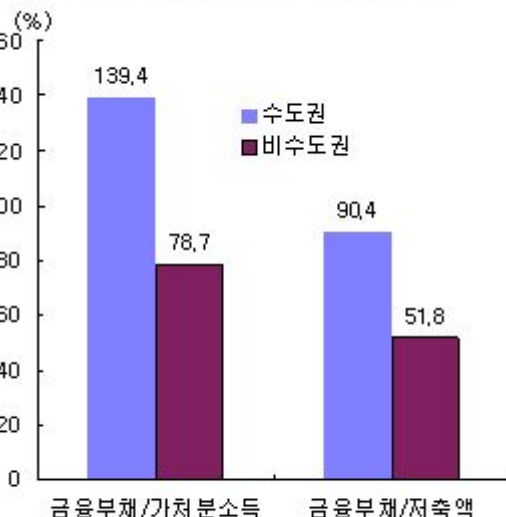
자료 : LH공사, 국토해양부  
 주 : 미분양아파트는 '준공 전'과 '준공 후' 모두 포함

**둘째, 가계부채 부담의 차이이다.** 수도권 가계대출 비중이 70% 이상이며, 통계가 시작된 2009년 3/4분기 72.8%에서 2011년 3분기 73.4%로 0.6%p 증가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30% 이하 수준에서 같은 기간 0.6%p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2011년 2월 기준 가계금융자산 조사에서 나타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처분소득대비금융부채 비율이 각기 139.4%와 78.7%로 수도권이 약 2배가량 높으며, 저축액대비 금융부채 비중도 각기 90.4%와 51.8%로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 지역별 가계대출 비중 >

	(단위 : %)	
	수도권	비수도권
09. 3/4	72.8	27.2
09. 4/4	73.0	27.0
10. 1/4	73.3	26.7
10. 2/4	73.5	26.5
10. 3/4	73.6	26.4
10. 4/4	73.6	26.4
11. 1/4	73.7	26.3
11. 2/4	73.5	26.5
11. 3/4	73.4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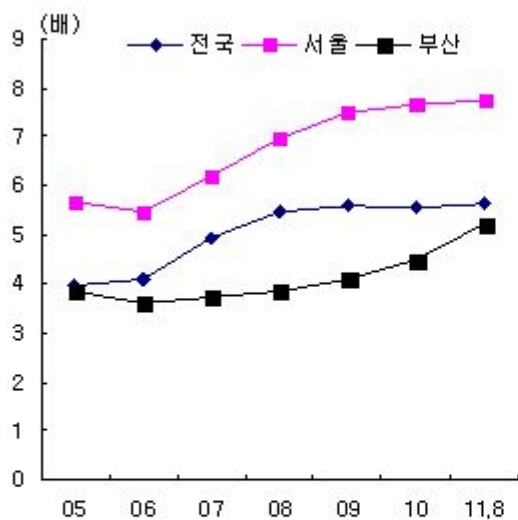
< 지역별 가계부채 부담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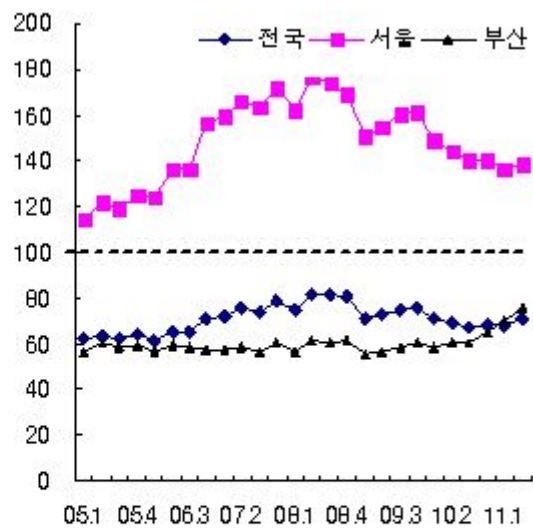
자료 : BOK,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주 : 지역별 부채부담은 2011년 2월 기준

셋째, 주택 구입능력의 차이이다. 서울 PIR(Price Income Ratio=평균주택가격/평균연소득)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상승 제한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감소로 2011년(1~8월) 7.74로 상승하고 있다. 반면 부산의 경우 2005년 3.85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나 금융위기 이후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5.24로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구입능력지수(대출상환가능소득/중간가구소득(월)\*100로서 100보다 클 경우 대출상환이 어렵고 100보다 작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는 금융위기 이후 서울은 140 이상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부산의 경우 70이하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 지역별 PIR >



< 지역별 주택구입능력지수 >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 주 : 1) PIR(Price Income Ratio=평균주택가격/평균연소득)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소득에 비해 높아 구입하기 어려워짐을 의미하며, 유엔 인간정주권위원회는 PIR은 소득의 3.5배가 적정 수준이라고 권고하고 있음
- 2) 주택구입능력지수=대출상환가능소득/중간가구소득(월)\*100로서 100보다 클 경우 대출상환이 어렵고 100보다 작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

## ○ 시사점

주택시장의 지역별 바이플레이션 현상이 내년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해보면, 수도권외의 경우 체감경기 악화 및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구매수요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아파트 시장 침체 흐름이 지속되어 장기 침체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비수도권의 주택시장 활황은 근본적인 수급요인이 불명확한 가운데 수도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면서 버블붕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규모별로 보면, 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등락을 지속할 것이 예상되지만,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와 현재의 미분양아파트 등을 볼 때 매매거래 부진 속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계없이 상당 기간 침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바이플레이션 속에서 국내 주택시장에서의 주택정책 방향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에 대한 주택정책은 전세수급 조절과 매매활성화를 통해 부채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뉴타운의 개발 시기 분산을 통한 전세수요의 속도조절과 미분양아파트 등을 활용한 전세물량 확보로 전세수급을 조절해야 된다.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장기화(20~30년)함으로써 가계부실 문제가 갑자기 불거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입지 조건과 수급 상황에 맞는 가격시스템을 통하여 시장 친화적으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해야 된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버블확산을 방지하고 버블 붕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가격 급등 현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dbpark@hri.co.kr, 02-2072-6216)**

□ 동향 : 빠르게 고령화되는 한국, 그러나 노후 준비 부족  
(2011년 고령자 통계 요약)

○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인구 중 1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14.3%로 증가할 전망

- 우리나라는 지난 '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에서 향후 '18년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14.3%, '26년에는 20.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65세 이상 인구 비율 : 3.1%('70)→7.2%('00)→11.0%('10)→14.3%('18)→20.8%('26)

<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 >

(단위 : %)

	1970	1990	2000	2010	2018	2026	203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42.5	25.6	21.1	16.2	12.7	11.7	11.4
15~64세	54.4	69.3	71.7	72.9	72.9	67.5	64.4
65세이상	3.1	5.1	7.2	11.0	14.3	20.8	24.3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

○ 한국의 고령화는 미국, 프랑스 등 기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고령인구 비율이 14%에서 20%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8년에 불과

< 주요 국가별 인구고령화 진전현황 비교 >

(단위 : 년도, 년수)

국 가	도달년도			증가 소요연수	
	7%	14%	20%	7%→14%	14%→2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이태리	1927	1988	2006	61	18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독 일	1932	1972	2009	40	3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

○ '09년 65세 기대여명은 남자 17.0년, 여자 21.5년으로 10년전('99년)보다 남자는 2.9년, 여자 3.5년 기대여명이 늘어남

- 70세 기대여명은 남자 13.4년, 여자 17.2년으로 10년전('99년)보다 남자는 2.4년, 여자 3.2년 늘어남

·80세 기대여명은 남자 7.5년, 여자 9.8년으로 10년전('99년)보다 남자는 1.3년, 여자 2.1년 늘어남

< 기대여명(65세 이상) >

(단위 : 년)

	남자			여자		
	1999	2009	'09-'99	1999	2009	'09-'99
65세	14.1	17.0	2.9	18.0	21.5	3.5
70세	11.0	13.4	2.4	14.0	17.2	3.2
80세	6.2	7.5	1.3	7.7	9.8	2.1

자료 : 통계청, 「생명표」 각년도

○ '09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0%로,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29.6%로 가장 많고, 다음은 '예금·적금(28.0%)', '기타 공적연금·사적 연금(22.9%)' 순

-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고령자(61.0%)의 경우 '준비할 능력 없음'이 54.4%로 절반을 넘었고, '자녀에게 의탁'할 계획도 39.5%로 나타남

·'09년 '노후가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고령자는 39.3%로 '05년(34.7%), '07년(34.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준비가 안된 고령자 중 '자녀에게 의탁'할 계획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 노후 준비방법(65세 이상) >

(단위 : %)

	계	준비되어 있음	준비되어 있음								준비되어 있지 않음	준비되어 있지 않음				
			소계	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부동산 운용	기타 <sup>1)</sup>		소계	아직 생각 안함	앞으로 준비할 계획	준비 능력 없음	자녀에게 의탁
2005	100.0	34.7	100.0	22.6	12.9	7.1	5.2	34.4	16.4	1.4	65.3	100.0	4.4	4.9	43.2	47.5
2007	100.0	34.7	100.0	17.2	14.6	8.2	5.3	34.8	19.1	0.8	65.3	100.0	2.7	4.6	45.7	47.0
2009	100.0	39.0	100.0	29.6	11.4	11.5	4.1	28.0	14.1	1.2	61.0	100.0	2.6	3.5	54.4	39.5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 1) '계', '주식, 채권 등' 포함



- '0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51.9%이며,
  - '자녀 또는 친척지원'이 37.6%,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도 10.4%로 나타남
  -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방법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49.7%)', '연금, 퇴직금(27.3%)', '재산소득(15.9%)' 순
  - '09년 생활비를 '자녀 및 친척지원'으로 마련하는 비중은 37.6%로 '05년(44.7%), '07년(42.1%)보다 낮게 나타남

< 생활비 마련방법(65세 이상) >

(단위 : %)

	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소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연금, 퇴직금	예금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 단체	기타
2007	100.0	52.3	100.0	59.9	13.5	17.7	8.9	42.1	5.5	0.1
2009	100.0	51.9	100.0	49.7	15.9	27.3	7.1	37.6	10.4	0.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 국민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과제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는 일반적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정의되는데 개인의 장수리스크는 은퇴 이후 등 전 생애를 고려해 계획한 소득 및 소비흐름이 지속가능하지 않아 발생하는 리스크로 정의될 수 있다.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소득보다는 가족으로부터의 이전소득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소득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의료비는 급증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기대수명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근로기간은 정체되어 있어 은퇴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장수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불충분한 고령자에게만 제공되는 연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회안정망이라 할 수 있겠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수명 증가가 낮은 출산률과 맞물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적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까지 축소하였고 연금수급개시 연령도 60 세에서 65 세로 상향조정 한 상황이다. 결국 국민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이 강조될 수 밖에 없으며, 퇴직연금을 통해 국민들의 장수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퇴직적립금이 중도에 소진되지 않도록 하며,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퇴직연금시장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후소득보장이 절실한 계층일수록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퇴직연금 가입이 대기업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더라도 퇴직연금에만 적용되는 독립적인 세제체계가 부재하고 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400 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퇴직연금 가입이 임의이기 때문에 퇴직금제도에 머물러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통해 노후소득재원이 중간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용자의 경우에도 최소적립수준이 기준책임준비금의 60%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 도산 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망 시까지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은퇴 시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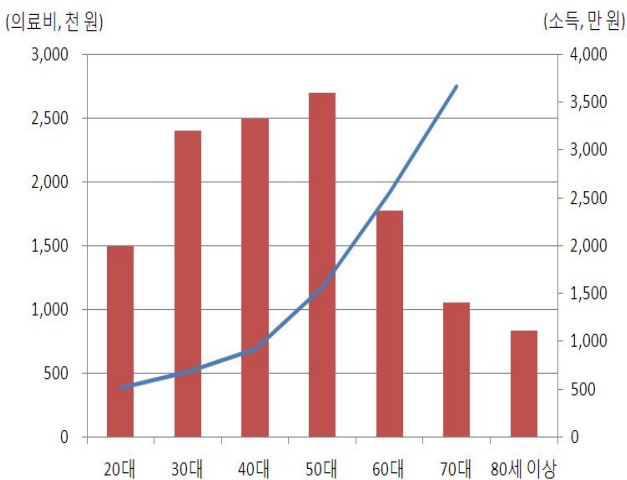
인구고령화로 인해 세대간 소득재분배에 근간한 공적연금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통해 국민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약근로자도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충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노후소득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들의 자조노력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만큼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 중심으로 단일화하여 중도에 노후소득재원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요국처럼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축소할 경우에는 퇴직적립금의 연금수령 유인하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I. 국민의 장수리스크 관리 필요성

○ 장수리스크 정의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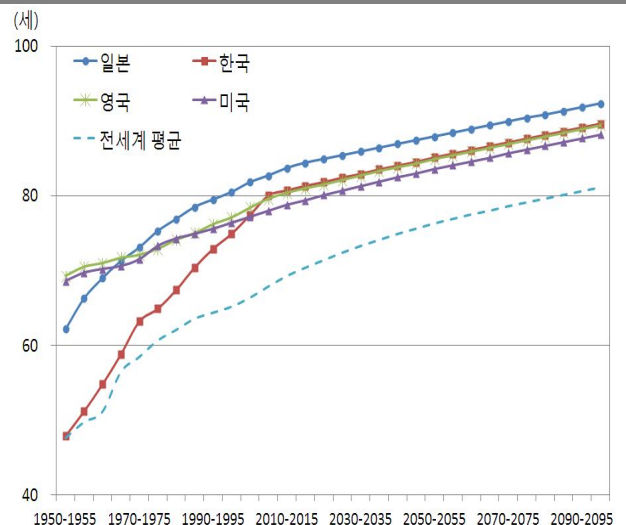
-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는 일반적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정의될 수 있음.
  - 개인 차원에서의 장수리스크는 은퇴 이후 등 전 생애를 고려해 계획한 소득 및 소비흐름이 지속가능하지 않아 발생하는 리스크
-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재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의료비는 급증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
  - 가구주 소득은 연령과 함께 증가하다가 50 대를 기준으로 감소하며, 특히 은퇴연령 이후 60 대부터는 급감하는 형태
  - 또한 은퇴 이후의 소득 중 사회보험소득의 비중은 낮은 반면 가족으로부터의 이전소득 비중은 높아 안정적인 소득원이 불충분한 상황
  - 반면 의료비는 출생직후 급감하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개인 총 생애의료비 중 60% 이상을 65 세 이후에 지출하고 있는 상황
- 안정적인 소득흐름이 부재한 상황 하에서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아프지만 오래 사는 은퇴기간이 장기화되어 가고 있음
  - UN 의 세계인구전망(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0 년과 2015 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의 기대여명은 81.3 세로 전 세계 평균치인 70.4 세를 크게 상회
  - 노동진입연령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빈번한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 등으로 은퇴연령은 58.7 세에 불과하여 은퇴기간이 점차 장기화되어 가고 있음

[그림1] 연령별 연소득 및 1인당 의료비 추이



주 : 1) 연소득은 노동패널자료(11 차)를 활용해 분석  
2)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통계(2010)를 활용해 분석

[그림2] 국가별 기대수명 추이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1

**II. 인구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의 역할 확대**

○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0 층(Pillar 0) 제도로서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1 층(Pillar 1) 제도로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2 층(Pillar 2) 제도로서 퇴직급여제도 그리고 3 층(Pillar 3) 제도의 개인연금으로 구성됨
  - 기초노령연금은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적은 경우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형태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등을 수급함에도 가용자원이 국민최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
  - 공적연금은 민간부문의 근로자 및 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 특수지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지역연금으로 구분
  -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급여보장법에 기초한 기존의 법정 강제퇴직급여제도와 2005 년 12 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로 구성

[표 1] 우리나라 노후보장제도 체계

구 분	일반소득계층			저소득층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사학교원, 군인	저소득층	빈곤선 이하 계층
3 층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2 층	퇴직연금	-	특수지역연금		
1 층	국민연금				
0 층				기초노령연금	
				-	기초생활 보장제도

○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와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

-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정망인 국민연금은 재정악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2 명(2005~2010 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기대수명 증가와 맞물려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초래하고 있음
  - 국민연금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악화를 경감하기 위해 1988 년 제도초기 소득대체율 70%를 2007 년 법 개정시 2028 년까지 40%가 되도록 조정함
  - 연금수급개시 연령도 현재 60 세에서 2013 년부터 2033 년까지 5 년마다 1 세씩 상향하여 65 세로 조정됨

[표 2] 국민연금의 보장성 축소 추이

연도	법정소득대체율	출생연도(년)	수급개시연령
1988~1998	70%	1953~1956	61

1999~2007	60%	1957~1960	0
2008~2003	60%에서 매년 1%P 씩 소득대체를 하향조정	1961~1964	9
2028년 이후	40%	1965~1968	64
		1969년생 이후	65

- 국민연금은 제도적 개혁을 통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악화를 극복하기 어려워 퇴직연금의 역할이 강조될 수 밖에 없는 상황
  -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 보장성을 축소하였지만 2040~2045년에는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며 2060년 경에는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수지구조는 여전히 취약
  - 개인연금제도는 1~2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해 마련되는 노후소득재원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로 가입하는 임의의 사적연금제도임
  -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사적연금제도이기는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준 사회보험제도이면서 제도적으로도 개인연금에 비해 우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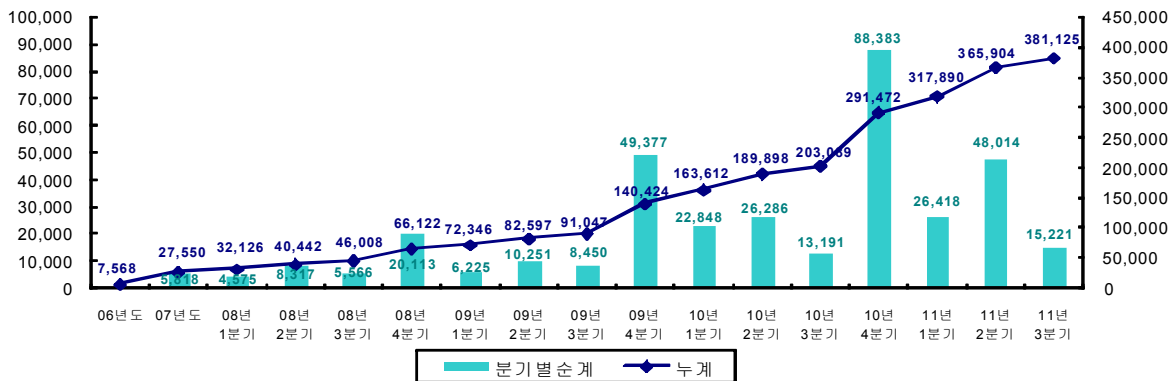
### III. 장수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 ○ 적립단계

-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국민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활성화시키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
-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 퇴직연금시장은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빠른 성장을 지속해 왔다는 측면에서 양적인 성장은 높이 평가됨
  -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6여년이 지난 현재(2011년 6월) 퇴직연금시장은 38조원 규모로 성장하였음

[그림 3] 퇴직연금시장 분기별 증가 추이

(단위 : 억 원)



자료 : 노동부, "퇴직연금 도입현황", 2011.9

-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성장 측면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이 절실한 계층일수록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
  - 500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68.8%가 퇴직연금을 도입한 반면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우 가입률이 미미한 상황으로 정작 노후소득보장이 절실한 계층의 가입이 저조

[표 3]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 현황

(단위 : 개수, %)

구 분	10 인 미만	10 인~ 29 인	30 인~ 99 인	100 인~ 299 인	300 인~ 499 인	500 인 이상	합 계
(A)도입 사업장수	67,759	33,684	14,759	3,954	658	770	121,584
(B)전체 사업장수	1,277,326	167,033	50,007	10,309	1,363	1,120	1,507,158
도입비율 (A/B,%)	5.3	20.2	29.5	38.4	48.3	68.8	<b>8.1</b>

자료 : 노동부, "퇴직연금 도입현황", 2011.9

-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이 정규직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정규직 근로자 대비 33.3%(2010년 8월)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
- 다행히 전체 취업근로자 대비 32.8%에 달하는 자영업인은 2010년 6월 근퇴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가입대상으로 포함됨
- 추가적으로 노후소득재원이 필요한 퇴직연금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독립적인 세제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한 노후소득재원 마련의 기능이 제한적임
  - 퇴직연금 가입자의 추가 부담금은 개인연금 적립금과 합산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퇴직연금 적립금에 부여되는 독립적인 세제혜택은 부재한 상황
  - 소득공제액도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400 만원에 지나지 않아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노후소득재원을 확충할 유인이 약함

○ **중간단계**

- 국민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적립된 퇴직금이 중간에 소진되지 않도록 2010년 6월 근퇴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짐
  - 노후에 사용되어야 할 적립금이 중간정산을 통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무주택가 주택을 구입 시,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시, 기타 천재·사변 등 이외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제한하고 이직 시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적립금을 이전하도록 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용자의 재무건정성 강화하기 위해 최소적립금 수준이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검증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함
- 하지만 여전히 적립금의 연속성과 수급권 보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문제들이 존재



-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의무제도이지만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퇴직금제도에 머무는 기업들의 근로자는 적립금의 연속성 차원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지급 재원의 회사 내 유보를 허용하고 있어 근로자 수급권이 취약하고, 여전히 중간정산이 허용되어 노후소득재원이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음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용자의 경우에도 최소적립수준이 기준책임준비금의 60% 수준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가 여전히 취약함

#### ○ 수령단계

- 국민들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망 시까지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가장 중요하지만 은퇴 시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 적립금 수령 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연금소득공제 혜택이 900 만원에 지나지 않은 반면 일시금으로 수령 시 적용되는 공제비율은 40%로 매우 높고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시금 수령이 일반화되어 있음
  - 일시금으로 수령 시 적용되는 공제비율 이외에도 퇴직소득세에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근무기간이 길어 적립금의 규모가 클수록 일시금 수령이 유리한 구조
- 연금수령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연금수령을 제도적으로 강제화하든지 아니면 세제를 통해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내의 경우 연금수령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어느 쪽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IV.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향

##### ○ 적립단계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약근로자도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통해 사회안정망의 불균형을 경감시킬 필요
  - 퇴직연금제도 자체의 활성화보다도 향후에는 중소형 사업장의 퇴직연금가입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의 규모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환경개선이 우선이며, 나아가 취약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되도록 많은 국민들이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적립단계에서 개인연금과 혼재되어 있는 퇴직연금 세제체계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세제체계를 마련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자조노력을 유인해야 함
  -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들이 자조노력을 통해 노후소득재원을 마련하도록 유인하고 있음

- 소득공제 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1 인당 GDP 의 14.6%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경우 50 세 이상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최대 47.4%에 달함

[표 4] 한국(퇴직연금)과 미국(DC형)의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 비교

구 분	소득공제 가정	1 인당 GDP(2009)	소득공제 금액	비율(b/a)×100
한 국	가입자 전체	20,488,800 원	4,000,000 원	19.5%
미 국	50 세 이상	46,381 달러	22,000 달러	47.4%
	50 세 이하	46,381 달러	1,6500 달러	35.6%

주 : 환율 1 달러당 1,200 원을 적용하여 한국 1 인당 GDP 계산

### ○ 중간단계

- 두 가지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 중심으로 단일화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이 중도에 소진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와 달리 적립금의 사외적립을 강제화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적립금의 생활자금화 방지를 위해 중간정산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음
  - 즉,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두 가지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병존시킬 이유가 없음
  -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은 수급권 강화, 가입의 용이성, 이직시 통산성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직금제도를 유지할 유인이 없음
- 다만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용자들이 퇴직연금 재원 전액을 사외에 적립할 수 있도록 현행 최소적립수준 60%를 100%까지 상향조정해야 함

### ○ 수령단계

- 주요국의 경우 인구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대신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키고 적립금은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인하여 국민들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함
  -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적립금이 은퇴자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영국, 칠레,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은 제도적으로 연금수령을 강제화 함
  - 스위스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시금을 수령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이상 연금을 지급하는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을 통해 연금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 미국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한해서는 디폴트 옵션을 활용해 정책적으로 국민들의 장수리스크를 헤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나라에서 연금수령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들이 세제혜택과 병행되어 추진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복지가 아닌 후불임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일시금에 부여하고 있는 공제비율을 축소하고 연분연승법을 폐지하여 소득수준과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연금수령이 일시금 수령보다 유리하도록 세제체계를 개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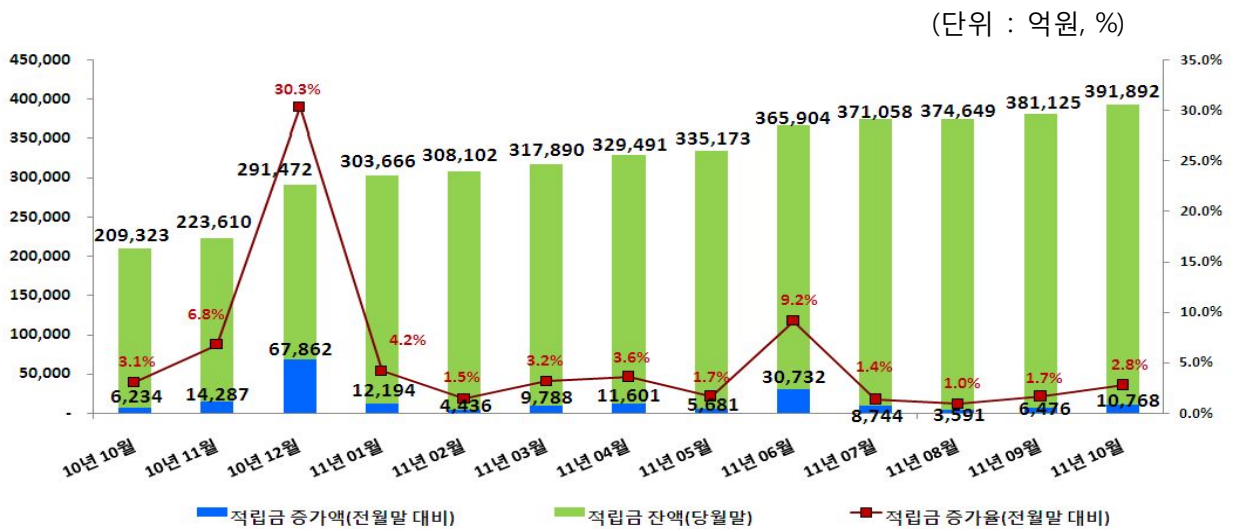
김대환, 경제학박사,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 실장 (02-3775-9026, dhkim@kiri.or.kr)

□ 퇴직연금통계 (2011. 10월 현재)

○ 적립금 규모

- 2011년 10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39조 1,892 억원으로 전월말(38조 1,125 억원) 대비 1조 767 억원 증가
- 전년말(29조 1,472 억원) 대비 34.5%(10조 420 억원) 증가
- 10월중 증가율은 2.8%로 미미하나, 연말에 크게 증가하는 퇴직연금의 특성으로 인해 11월부터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



자료 : 금융감독원

○ 도입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25,504 개소로 전월말(121,584 개소) 대비 3.2% 증가
- 총 사업장(1,507,158개소)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8.3%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단위 : 개소, %)

구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사업장수	70,019	34,602	15,179	4,175	671	858	125,504
(B)전체 사업장수	1,277,326	167,033	50,007	10,309	1,363	1,120	1,507,158
도입비율 (A/B,%)	5.5	20.7	30.4	40.5	49.2	76.6	8.3

자료 : 금융감독원

## □ 洗心錄

### □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라

애플의 창업자이자 창의와 혁신의 상징인 스티브 잡스(Steve Jobs, 1955~2011)가 세상을 떠났다. 전 세계인의 추모 물결과 더불어 구글 회장 에릭 슈미트는 “지난 100년 동안의 가장 훌륭한 경영자”일 것이라고 표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CNN은 현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비유하면서 잡스의 창의성을 높이 평가했다.

시대를 대표하는 대가(大家)가 창의성을 완성하는 시기는 ‘20살이 되기 전’이라고 한다. 잡스는 청소년시절 집안 차고에서 기술을 습득하면서 창의성을 키운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차고에서 각종 공구를 만지며 부수고 만들기를 반복한 다양한 경험들은 오늘날 글로벌 아이콘이 된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기초가 되었다. IT업계에서는 “성공하려면 애플처럼 경영하라”는 말이 있다. 애플의 돋보이는 경영 철학 중의 하나는 튀는 인재 발굴이다. 애플은 출퇴근을 체크하는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다. 잡스는 세상에 없는 것을 처음 만들고자 노력하는 창의적인 의욕을 갖춘 젊은이를 선호했다. 자신보다 뛰어나고 자신과는 다른 성향을 가졌으며 대형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늘 찾아다녔다고 한다.

창의성으로 무장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으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한 사람의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된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세상인 것이다. 새로운 발상이 처음에는 쉽게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99명이 반대하더라도 믿어 주고 지지해 주는 한 명이 있다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기업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바로 CEO이며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이다. 성패를 결정하는 열쇠는 시간과 행동이다. 좋은 생각이 났다면 즉시 일어나서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라.

**우주를 놀라게 하자 (Make a Dent in the Universe)**

- 스티브 잡스(1955~2011) : 애플 창립자